



정상윤의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결성활동 사건

【결정사안】

정상윤이 명치대학교 3학년 재학 중 여름방학에 고향인 평안북도 철산에 왔다가 1928.8. 철산군 신간회지회 설립을 주도하며 항일독립운동을 한 이유로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정상윤이 1928.8.12. 평안북도 철산군 여한면 동덕동 석봉약수 부근에서 정치언, 박봉수, 정국일 등과 함께 신간회 철산지회 발기인 총회를 갖고 개회사 및 사회를 본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같은 달 19일에는 철산군 참면 유정동 소재 차련관 유치원에서 정사복 경찰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철산군 신간회지회 설립대회를 개최하여 대회를 하고 철산지회 간부 등을 선출하고 대회를 마쳤으나,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려고 미리 준비한 문건인 “우리들 2천만 동포와 삼천리강산이 주인을 잃은 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우리들은 그간 무한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 정치적으로 털끝만큼의 자유도 없었다...”로 시작되는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취지서』 약 200매가 경찰에 압수되었고, 이 문서가 문제되어 정상윤 등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을 주도한 9명이 경찰에 체포·기소되고 재판을 받았으며, 1930.5.5. 보석이 허가되어 출옥할 때까지 1년 8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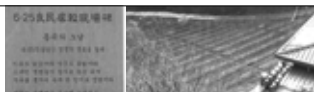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3. 신간회 철산지회 사건으로 출옥한 후에는 고향인 철산의 협성야학회(協成夜學會)에서 문맹퇴치와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청년활동을 하다 1932.5.에 철산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 문】

【사 건】 가-4002 정상윤의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결성활동 사건

【신청인】 정혜열

【결정일】 2007. 5. 15.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I. 신청 개요**

신청인은 부친인 정상윤(鄭相允, 1905.10. 생 ?)이 명치대학교 3년 재학 중 여름방학에 고향인 평안북도 철산에 왔다가 철산군 신간회지회 설립을 주도하여 실형을 받고 옥살이 하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일제로부터 갖은 탄압을 받았고, 이후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되었던 바 “비록 좌익일지라도 독립운동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상윤의 신간회 철산지회 항일독립운동활동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이다.

II. 진실규명 과제

정상윤의 항일독립운동 행적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대상자 정상윤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기에 동인의 생년월일 및 정상윤과 신청인 정혜열의 관계를 공적장부로 확인할 수 없는 바, 진실규명대상자 정상윤과 문헌 자료에서 발견되는 정상윤의 동일인 여부 규명.
2. 1928. 8.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과정에서 정상윤 등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행한 항일운동은 무엇이었는가이다.

이는 1927년 2월 ‘민족 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제휴하여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新幹會)가 전반적으로 항일운동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고, 일제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당시 합법단체였고, 단지 신간회를 설립하였다거나 신간회 간부 또는 회원이란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속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신간회 철산지회 사건의 경우에도 진실규명대상자인 정상윤과 8인이 구속되는데 간부직에 선출된 다른 10여명은 구속되지 않았다.¹⁾



따라서 신간회 지회 또는 주도 인물에 따라 항일운동 성격과 적극성에서 크게 차이가 났고,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정상윤 등의 구체적 활동규명은 한편으로 신간회 철산지회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 신간회 철산지회사건 이후 정상윤의 항일운동 행적은 무엇인가이다.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1. 조사 목적

예비조사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정상윤이 1928. 8. 평안북도 철산군 신간회 지회설립에 박봉수 등 8인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기사가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등 당시 신문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앙 또는 지도부 위주로 연구·서술되어 지역 또는 지방에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항일독립운동이 묻히거나 중요한 사실이 간과된 경우가 많았고 신간회의 경우도 현재까지 지회활동에 대한 조사·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본 사건을 통하여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사 근거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 범위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사전조사 결과 정상윤이 1928. 8. 평북 철산군 신간회지회 설립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상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2006. 8. 22.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

1) 『중외일보』 1928.8.24.

IV. 조사방법 및 경과

1. 조사방법

가. 문헌조사

정상윤이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항일운동을 하였는지 밝힐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관련 자료가 소장된 기관 즉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이북5도청 등의 자료를 검색하여 정상윤 등의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관련 경성고등법원판결문, 신문기사 등을 찾아내었다.²⁾

나. 진술청취

정상윤이 1940년경 이주하여 살았다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 금대리를 1회 실지조사하여 참고인 정일혁³⁾과 철산군 참면 회장 이성희⁴⁾를 만나 진술청취를 하였다.

2. 조사경과

각 신문 및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참고인 진술조사 그리고 금대리 실지조사 등 정상윤의 신간회 활동에 대한 주요조사 경과를 일정순서에 따라 조사일지⁵⁾를 작성하였다.

V. 조사결과

1. 진실규명대상자 정상윤과 문헌자료에서 발견되는 정상윤의 동일인 여부

진실규명대상자 정상윤의 생년월일 및 정상윤과 신청인 정혜열의 관계를 공적장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상윤이 1940년경 평북 철산에서 충남 공주로 이사하였으나 이주 시에 호적을 평북 철산에서 공주로 전적하지 않았고, 1956.12.14.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취적이 허가되었으나 정상윤은 이미 사망(신청인에 의하면 1951년경 사망 추정함)하였기에 호적에 올리지 않아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⁶⁾

따라서 진실규명대상자의 생년월일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윤과의 '부녀관계'를 공적장

2) 조사결과보고서의 참고문헌 목록 참조.

3) 참고인 진술서 참조.(2006.10.18.)

4) 참고인 진술서 참조.(2006.11.13.)

5) 조사일지는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6) 신청인 진술.(2006.7.3. - 전화통화)



부로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적등본이 없기 때문에 철산지회 설립과 관련하여 체포된 정상윤이 문헌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 이 정상윤과 신청인이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정상윤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먼저 조사했다.

정상윤의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사건과 관련하여 발견한 판결문은 경성고등법원판결문⁷⁾이 유일한데, 이 판결문에는 정상윤의 본적, 주소, 나이(24세), 직업(명치대학생)만이 적시되어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청인에 의하면 대학교 이전까지는 현재 북한지역에서 학업을 마쳤다고 하기에 이 또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정상윤이 1928년 8월 신간회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명치대학교 3년에 재학 중이었음⁸⁾으로 명치대학교에 학적부 등 정상윤에 대한 자료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명치대학으로부터 “정상윤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의 부친인 정상윤과 이주 후 신청인이 다녔다는 공주시 계룡면 소재 계룡초등학교 학적부⁹⁾를 입수하여 검토한 바, 학적부에는 신청인 정혜열(鄭惠烈)이 “하동혜열(河東惠烈)”, 보호자는 “하동상윤(河東相允)”으로 기록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의 부친이 하동 정씨이기에 창씨개명 시에 성(姓)을 하동(河東)으로 하였다”는 진술¹⁰⁾과 신청서에 기입한 본적, 주소, 이주 등에 대한 진술 및 학적부에 기록된 본적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 정혜열과 하동혜열, 규명대상자 정상윤과 하동상윤은 각각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1941년 입학하여 1947년 졸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보호자의 경우는 이름, 주소, 본적, 직업만이 기록되어 있어 정상윤의 생년월일은 알 수 없었다.¹¹⁾

그러나 신청인은 부친 정상윤이 1905년 10월생¹²⁾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정상윤의 판결문에 24세(1929년)라고 적시되어 있기에 신청인의 진술대로 정상윤은 1905년생이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2. 1928년 신간회(新幹會) 철산지회 설립사건 개요

정상윤(鄭相允), 정치언(鄭致彦), 박봉수(朴鳳樹), 정국일(鄭國一) 등은 1928.8.12. 평안북도 철산군 여한면 동덕동(鐵山郡 餘閑面 東德洞) 석봉약수(石峰藥水) 부근에서 신간회 철

7) 정상윤 등에 대한 경성고등법원판결문(1930.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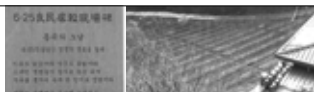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8) 신청인의 진술 및 정상윤의 판결문에 적시됨.

9) 신청인의 계룡국민학교학적부.

10) 신청인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진술.(2006.7.15.)

11)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 계룡국민학교학적부와 판결문에 기록된 본적이 일치함.

12) 신청인 진실규명신청서 참조.



산지회발기인 총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외부적으로는 합법단체를 표방하였으나, 실상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신간회 철산지회 발기인 총회에서 정상윤이 사회를 보고 정치언이 취지 설명을 하였다.

같은 달 19일에는 철산군 참면 유정동 소재 차련관 유치원에서 정사복 경찰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철산군 신간회지회 설립대회를 개최하여 철산지회 간부 등을 선출하고 대회를 마쳤다. 그런데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려고 미리 준비한 문건인 “우리들 2천만 동포와 삼천리강산이 주인을 잃은 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우리들은 그간 무한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 정치적으로 털끝만큼의 자유도 없었다...”로 시작되는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취지서』 약 200매가 경찰에 압수되었고, 이 문서가 문제가 되어 정상윤, 박봉수 등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을 주도한 9명이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취지서』를 해당관청에 허가받지 않고 제작하였다하여 출판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철산지회 설립을 주도한 정상윤 등 9명은, 최초에는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년이 넘는 신의주지방법원 예심과정에서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취지서』 내용이 불온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이라 하여 치안유지법 위반¹³⁾의 죄가 덧붙여져 결국 1929.11.13.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으로 박봉수는 징역7년, 정상윤, 정치언, 정국일은 각 징역5년 등의 중형이 선고되었다.¹⁴⁾

이에 정상윤 등 9명은 신의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¹⁵⁾ 재판은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으로 넘어가 1930.4.22. 대정8년(1919년)의 제령 제7호(制令 第7號)¹⁶⁾와 출판법 위반은 원심대로 적용하여 박봉수는 징역 2년을, 정상윤을 비롯한 나머지 8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¹⁷⁾ 출옥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이들에 대한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하여 석천(石川) 검사가 정용증¹⁸⁾을 제외한 8인을 경성고등법원에 상고, 8인의 신간회 철산지회 사건은 경성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8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보석신청을 하게 되고 박봉수를 제외한 7인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어 1년 8개월여의 옥고를 마치고 1930.5.5. 출옥하여 고향인 평북 철산으로 돌아갔다.¹⁹⁾

13) 치안유지법 개요 : 별첨 1.

14) 함께 기소된 김상겸(金尙謙)은 징역3년6월, 계응봉(桂應奉)은 징역3년 그리고 정용증(鄭用曾), 최석희(崔錫禧), 안갑록(安甲祿)은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음.(『동아일보』 1929.11.22.)

15) 『동아일보』 1929.12.4., 1929.12.11., 1929.12.26.

16)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을 다룬령임.

17) 박봉수는 징역2년, 정치언, 정국일, 김상겸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5년, 정상윤, 최석희, 안갑록, 계응봉은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정용증은 금고6월 집행유예3년이 선고됨.(『조선일보』 1930.4.23.)

18) 정용증은 1930.4.27. 출옥함.(『조선일보』 1930.5.7.)

19) 『중외일보』 1930.5.3., 1930.5.10., 『조선일보』 1930.5.7.



석천 검사의 상고로 경성고등법원으로 넘어간 8인에 대한 재판은 1930.7.21. 경성고등법원이 평양복심법원에서 적용했던 대정8년의 제령 제7호를 다시 1심에서 적용했던 치안유지법 위반과 출판법 위반을 적용하고, 형량은 “피고인들이 조선독립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인정하나 계획협약에 그쳤다”는 이유로 평양복심법원에서와 같은 형량을 적용²⁰⁾하여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

3.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모임의 의미

신간회 철산지회의 설립은 젊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항일운동 성격이 강하고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주장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른 9명의 판결문에 적시된 나이와 직업을 살펴보면 박봉수(27세, 중외일보 기자), 정상윤(24세, 명치대학생), 정치언(27세, 일본대학생), 정국일(22세, 농업), 김상겸(23세, 농업), 최석희(24세, 농업), 안갑록(26세, 농업), 계응봉(25세, 일본대학생)등이다.²¹⁾

신간회 철산지회의 항일운동 성격과 조선독립의 염원은 위 사건이 커지게 된 문건인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취지서』에 잘 나타나 있으며, 현재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나 경성고등법원판결문²²⁾에 적시된 항거사실(범죄사실)과 유죄판결 선고이유 주요내용은 같다.

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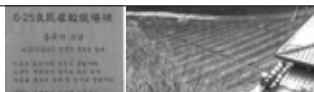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피고인 박봉수, 정치언, 정국일, 김상겸, 정상윤, 계응봉, 최석희, 안갑록 등은 소화 3년(1928년) 8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여한면 석봉약수 부근에서 회합하여 합법단체인 신간회 철산지부를 설치하고, 그 표현단체의 이면에 숨어서 조선의 정치적 분리 즉 정치변혁을 공동 달성하고자 기도하였다. 또한 당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목적을 암시하는 불온 문서의 출판배포 및 철산군 참면 유정동 차련관 유치원에 그 표현단체인 신간회 철산지부를 설치하고 대회 개최의 건 등을 모의 계획하였다.

피고인 정치언은 다른 피고인들의 뜻을 받아 같은 달 14일경 자택에서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취지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2천만 동포 및 3천리 강산이 주인을 잃은 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우리들은 그 동안 무한한 압박과 착취를 받아 정치적으로 털끝만큼의 자유도 없었다. 우리들은 토지와 자유를 빼앗기고 기한(飢寒)과 압박에 눈물 흘리며 일본 혹은 남북만

20) 정상윤 등 8인에 대한 경성고등법원 판결문.(1930.7.21.)

21) 1, 2심 판결문이 없고 검사 측이 정용증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기에 정용증의 직업과 나이는 알 수 없으나 1929. 11.15.자 『중외일보』에 당시 정용증의 직업은 일본대학생 나이는 25세로 보도하고 있음.

22) 정상윤 등 8인에 대한 경성고등법원 판결문.(1930.7.21.)



주(南北滿洲)로 유랑하고 있고 조선인인 우리가 이르는 곳에서는 구축(驅逐), 압박, 박해, 멸시를 받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교묘한 착취와 끝없는 압박은 점점 혹독해지고 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착취와 압박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우리의 반항열(反抗熱)도 더욱 높아만 갈 뿐이고 기미운동 이후 우리의 반항운동은 점점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략) 민족적 역량을 통합하여 이중삼중으로 속박하고 있는 가혹한 철선을 2천만의 불끈 쥔 주먹으로 분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통절하게 절규하는 바이다. 모이고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우리의 강렬한 대중적 요구이다. 우리의 사활을 결정할 이 침통한 대중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민족적 단일세력으로 결성과정에 있는 우리 신간회이다. 신간회는 실로 우리 조선에 있어 모든 갱생의 희망을 품고 가까운 장래에 위대한 날을 민중 앞에 약속했으며, 비장한 결의로써 험난한 정치전야(政治戰野)의 장도(壯途)에 선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맡긴 전 민족적 총아를 우리의 힘으로 옹호하자. 철산인들이여 함께 분기하자. 그리하여 우리도 민족 갱생의 길을 건설하자. 이것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불온 과격한 문사를 나열하여 조선인의 정치적 분리를 암시하는 취지를 서술한 원고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8월 15일 철산읍 내에서 피고인 김상겸에게 주었다. 김상겸은 8월 17일 피고인 정용증의 집에서 정국일에게 주고, 정국일은 그 곳에서 복사원지 2매에 철판로 이를 필사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김상겸에게 주었다. 김상겸은 피고인 정용증과 함께 철산읍내 천도교종리원 사무실에서 등사판기계를 사용, 위 원지에 기초하여 약 200매를 등사출판하였지만, 같은 달 19일 경찰관에게 압수되어 배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앞서 기술한 유치원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박봉수, 정상윤, 정국일, 안갑록 등과 신간회 지부설치에 찬성한 입회희망자를 포함해 약 30명 정도가 회합하여 지부설립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박봉수는 지부장, 피고인 정국일은 서기,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전국대의원, 피고인 정국일, 안갑록, 김상겸, 최석희는 간사가 되어 이면에서 위 표현단체를 조종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유죄판결 선고 이유

원판시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취지서의 내용을 살펴봄에 그 문사가 교묘, 완곡하여 문중에 간간히 “정치적으로 털끝만큼의 자유도 없었다”, “정치전야(政治戰野)의 장도에 섰다”등의 어사가 있고, 그 모두에 “우리 2천만 동포 및 3천리 강산이 주인을 잃은 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우리들은 그 동안 무한한 압박과 착취를 받아”라고 전제하고 나아가 혹은 “기미운동 이후 우리의 반항운동은 점점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혹은 “그렇다면 우리들의 결정적 태도는 파괴된 인간적 존재를 탈환하기 위한 최후의 단결이 있을 뿐이다. 즉 민족적



역량을 총합하여 이중삼중으로 속박된 가혹한 철창을 2천만 명이 행동으로 분쇄하는 데 있다”고 논하고 혹은 “신간회는 실로 우리 조선에 있어 모든 갱생의 희망을 품고 가까운 장래에 위대한 날을 민중 앞에 약속했으며”라고 설명하고 끝으로 “우리도 민족 갱생의 길을 건설하자. 이것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함에 유의하여 전문(全文)을 통독하면, 그 주안된 취지는 조선의 독립을 달성함에 있다는 것을 곧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것은 우리 제국영토의 일부를 참절(僭竊)하여 그 통치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은 즉 치안유지법의 소위 국체의 변혁을 기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한국(舊韓國) 융희 3년²³⁾ 법률 제6호 출판법 제11조 제1항의 소위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략)

이상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 주도자들에 대한 경성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보여지듯이 신간회 철산지회는 조선독립 달성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전 민족의 일치 단결을 주장하며, 민족의 일치된 단결만이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간회 철산지회는 1928.8.19. 설립대회 직후 설립취지서를 인쇄하고 배포하려 한 것을 이유로 주도 인사들이 연행되어 실제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다.

신간회 철산지회가 비록 신간회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신문²⁴⁾에 철산지회 간부들이 설립취지서 문제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실이 보도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철산지회 사건은 조선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게 큰 이슈였으며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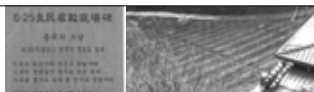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즉 1930.2.8.자 동아일보와 1930.4.16.자 중외일보는 평양복심법원으로 넘어간 신간회 철산지회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보도하면서 당시 세인들에게 큰 관심사였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당시 언론과 조선민중들의 이러한 큰 관심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갈구하는 염원이 신간회 철산지회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²⁵⁾

비록 신간회 철산지회 간부들이 설립대회 직후 체포되는 바람에 신간회 본연의 활동은 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신간회 철산지부설립 취지서에 나타난 조선독립의 염원과 적극적 항일운동정신은 당시 신문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보도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당시 대중들에게 조선독립과 항일운동의 당위성과 기대감 및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3) 1909년임.

24) 『중외일보』 1928.8.24., 1929.11.14., 『동아일보』 1929.5.9.

25) 『동아일보』 1930.2.8., 『중외일보』 1930.4.16.자 기사 내용 : 별첨 2.



4. 신간회 철산지회에서 정상윤의 역할

경성고등법원 판결문에는 1928.8.19.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대회를 갖고 그 집행부로 피고인 박봉수는 지부장, 피고인 정국일은 서기,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전국대의원, 피고인 정국일, 안갑록, 김상겸, 최석희는 간사로 피선되었다고 적고 있다. 경성고등법원판결문 상으로는 정상윤이 철산지회 주모자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 역할은 나타나 있지 않다.

철산지회 사건으로 재판받은 9명에 대한 자세한 역할은 신의주 지방법원 판결문과 평양복심법원 판결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구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당시 철산지회관련 신문기사에 보도된 정상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928. 8. 16.자 동아일보는 “신간회 철산지회 발기인 총회가 여한면 동덕동 석봉에서 8월 12일에 열렸으며 정상윤이 사회를 보았고 같은 달 18일에 설립대회를 갖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고 있으며, 1928.8.18.자 중외일보는 이날(12일) 모임을 소개하며 “12시에 발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정상윤의 열렬한 개회사 후 발기인 서명이 있었고 정치언의 취지설명이 있었으며 설립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정한 결과 위원장 박봉수, 서기에는 정국일과 김상겸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달 18일에²⁶⁾ 철산지회 설립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기사의 맨 앞부분에는 발기인들이 모이게 된 동기인 글귀를 실고 있다.²⁷⁾

또한 1928. 8. 24.자 중외일보는 같은 달 19일 열린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대회를 전하면서 “장내 외에 정사복 경찰관이 배석하여 모인 인사들로 하여금 끓는 피가 한층 더 끓게 하였으며 정상윤이 대회사를 하였으며 정국일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임시집행부를 구성하여 의장에 정상윤, 서기에 정국일이 피선되었고 임원으로 전국대회대의원에 박봉수, 정국일, 노원수 3인을, 간사에 정국일, 김상겸, 최병수, 정용중, 최석희, 안갑록, 박승무, 계응봉 등 12명을, 관리조직부 3인, 정치문화부 3인, 조사연구부 3인을 선거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경성고등법원 판결문에 “박봉수는 지부장, 피고인 정국일은 서기,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전국대의원”이라고 적시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즉 박봉수와 정국일이 전국대의원에 피선된 것은 위 기사와 판결문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나, 철산지회 의장을 판결문에서는 박봉수로 적시하고 있고 중외일보 기사는 의장이 정상윤이라고 보도하고 있다.²⁸⁾

26) 위 두 신문기사에는 철산지회 발기인 총회를 보도하면서 철산지회 설립대회예정일을 18일로 적고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는 19일에 열린다.

27) 『동아일보』 1928.8.16., 『중외일보』 1928.8.18.자 기사내용 : 별첨 3.

28) 1928.8.18.자 『중외일보』는 12일 발기인 총회를 열고 설립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박봉수를 선출하였다고 적고 있음.



이와 같이 신간회 철산지회 위원장(의장)이 경성고등법원 판결문과 당시의 신문기사와 서로 다르게 적고 있어 박봉수와 정상윤 중 누가 철산지회 의장을 맡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당시 신간회 철산지회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를 살펴볼 때 정상윤이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29.10.18.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제6회 공판 후 검사 측이 ‘정치인 등 7명에게는 징역5년을 구형하였으나 박봉수와 정상윤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데서도 추정할 수 있다.²⁹⁾

5. 신간회 철산지회사건 이후 정상윤의 항일운동 행적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정상윤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은 박봉수를 제외한 7인과 함께 1년 8개월여의 옥고를 마치고 1930년 5월 5일 출옥하여 고향인 평북 철산으로 돌아간다.³⁰⁾

평북 철산이 현재 북한지역이어서 실지조사와 자료조사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신간회 철산지회 사건으로 출옥한 이후의 정상윤의 행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정상윤은 1930.5.5. 출옥한 이후에 문맹퇴치와 민족사상 고취를 위한 청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야학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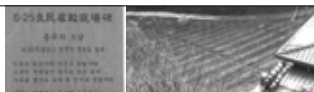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1976년 발행된 『철산군지』에 의하면 “1932.5.5. 철산경찰서는 돌연 군내 청년 70여명을 검거하고 반제동맹을 조직하였다고 사건을 날조하여 가혹한 고문을 하다가 아무런 죄과도 캐 내지 못하고 약 20일 후에 모두 석방하였는데 당시 참면에는 협성야학회(協成夜學會)를 중심으로 문맹퇴치를 겸하여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청년활동이 있었던 바, 일제는 이 야학의 주변을 예의 주시해 오던 중 차련관의 밀정으로 알려진 최모(崔某)가 차련관에 비밀결사의 움직임이 있다고 밀고하자 경찰은 아연 긴장해서 야학회 주변의 청년들과 기타 군내의 위험 인물로 지목되는 청년들을 모조리 검거하였고, 검거된 인사 중에는 협성야학회 운영을 주도하여 오던 차정호(車鼎湖)와 정영국(鄭永國)을 위시하여 차정보(車鼎輔), 황병화(黃丙華), 정상윤(鄭相允), 손정수(孫定洙), 정국일(鄭國一) 등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협성야학회와 창동학교(彰東學校)가 일제관현에 의하여 완전히 폐쇄되었다”³¹⁾고 적고 있다.

『철산군지』에 소개된 위 야학회 사건은 1932.5.9.자 동아일보 기사에 “철산경찰서에서 정상윤 외 청년 20여명을 검거하여 사건 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치고 조사 중”이라는 기사로 미루어 보아 사실로 판단된다.³²⁾

29) 『중외일보』 1929.11.15., 『동아일보』 1929.11.22.

30) 『중외일보』 1930.5.3., 1930.5.10., 『조선일보』 1930.5.7.

31) 철산군지편집위원회 편, 『철산군지』, 1976. 432~433쪽.



VI. 결론

진실규명대상자 정상윤은 박봉수, 정치언, 정국일 등 8인과 함께 1928. 8.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1928.8.12. 평안북도 철산군 여한면 동덕동 석봉약수 부근에서 열린 신간회 철산지회 발기인 총회에서는 사회를 보며 회의 진행을 하였다.

같은 날 동인들과 함께 신간회 철산지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19일 철산군 참면 유정동 소재 차련관 유치원에서 정사복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무릅쓰고 철산군 신간회 지회 설립대회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하였으며, 철산지회 간부 등을 선출하였다.

또한 발기인들의 뜻을 받아 정치언이 작성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문건인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취지서』 약 200매를 설립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포하려다 경찰에 압수되어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을 주도한 8인과 함께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을 거쳐 1930.7.21. 경성고등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으로 유죄판결(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받고 1년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도 평북 철산에서 문맹퇴치와 민족사상 고취를 위한 야학 등 청년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정상윤의 항일독립운동은 진실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32) 『동아일보』 1932.5.9. 기사내용 : 별첨 4.



별첨 1

치안유지법 개요

치안유지법은 천황제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1925년 제정된 일제의 법률로,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된 긴급칙령의 후신임.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12일 공포되고 같은 해 5월 12일 시행되었으며, 소화 3년(1928년) 6월 칙령 제129호에 의해 조선, 타이완, 사할린에서도 시행됨.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 그리고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자”로 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 및 사법부는 “국체의 변혁”이라는 요건을 매우 폭넓게 적용하여 거의 모든 독립운동을 처벌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을 광범위하게 탄압하는 유용한 법률도구이었음. (출처 : 한상범, 『사상·양심의 자유 짓밟아온 일제 치안유지법의 잔재』, 『역사비평』, 1993.).

별첨 2

동아일보·중외일보 기사

① 1930.2.8.자 동아일보 기사 :

鐵山新幹事件 控訴公判開廷 일심에서 중형바든사건 被告等供述만聽取

“신간회철산지회(新幹會鐵山支會) 박봉수(朴鳳樹) 정상윤(鄭相允) 등아홉명의동지회 설립취지서 한 장이 출판법위반으로 기소되어가지고 예심에서 다시치안유지법위반을검해야 ▲朴鳳樹懲役七年 ▲鄭相允, 鄭致彦, 鄭國一各懲役午年 ▲金尙謙懲役三年六個月 ▲桂應奉懲役三年 ▲鄭用增, 崔錫禧, 安甲錄懲役各二年六個月 이라는 아즉 조선의 정치범 또는 사상범으로서 바다본 일이 업는 파격의 중형을 신의주 일심에서 받고 평양복심으로 넘어와 루차 공판이 연기된 사실은 루보하얏거니와” (이하 생략).

② 1930.4.16.자 중외일보 기사 :

鐵山新幹會 公判도延期 재판소의사정리유로 來二十二日에開廷

“신간회 철산지회(新幹會鐵山支會) 사건의 속행공판도 십오일 오후 한시경에 등촌(藤村)재판장 석천검사 조국 지방배석판사의 열석하에 신의주공산당사건을 잠시 개명하얏다가 폐명한다음에 개명되었섰는데 역시 이 사건도 재판소의 사정으로 오는 이십이일로 연기하고 즉시 폐명하얏는바 이와가티 신의주공산당사건과 신간회사건 공판을 방텅코저 멀



리 철산과 신의주와 그 외 각지에서 온 방탕객들은 두 가지 사건의 공판을 구경하지 못하고 또는 피고들의 얼굴도 못 보는 것을 섭섭히 생각하고 돌아갔더라”.

◆ 별첨 3

동아일보 · 중외일보 기사

① 1928.8.16.자 동아일보 기사:

新幹支會發起會 鐵山郡

“同 餘閑面 東德洞 石峰에서 지난 十二일에 全鐵山有志가 會合하여 新幹支會發起總會를 開하고 鄭相允氏 司會下에 鄭致彦氏의 趣旨說明이 있은後 大會準備委員 一切는 委員會에 一任하였는데 設立大會期日是 來十八일로 豫定하였더라”.

② 1928.8.18.자 중외일보 기사:

鐵山新幹支會 發起人總會

“우리 鐵山에도 六萬大衆이 사는 곳ियो 二千三百萬大衆의 一部分인 우리 鐵山으로서 全民族單一黨인 新幹支會가 업슴은 피가 있고 生覺이 남가튼 우리로는 一大遺憾으로 알고 同志 十餘人이 모이혀 討議한 結果 지난 十二일에 鐵山郡 餘閑面 東德洞 石峰藥水 仙鑛에서 同志 三四人과 發起人 十餘人은 더웁도 不拘하고 쓸는 피를 한 대묵어서 全民衆을 爲하여 奮鬪한다는 精神으로 모이엇다 때마침 十二時에 發起總會를 開催하고 鄭相允君의 熱熱한 開會辭를 비롯하여 發起人 署名이 있은後 鄭致彦君의 趣旨說明이 있은後 니여 新支宣傳方法을 討論하고 設立大會準備委員會로 모이엇다 ○○에서 任員을 選定한 結果 委員長 朴鳳樹 書記 鄭國一 金尙謙 兩人이 被選되얏다 設立大會는 來十八日當地幼稚園內에서 모이기로定하고” (이하생략).

※ “○○”은 해독불가한 글자임

- 또한 위 인용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간회 철산지회를 설립하기 위해 적어도 1928.8.12. 이전에 십여 명이 모여 토의하고 준비한 결과 같은 달 12일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별첨 4

1932.5.9.자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는 “鐵山警察大活動”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평북 철산(鐵山) 경찰서에서는 지난五日 오전 삼시경에 전서원이 총출동하여 읍내 정석행(鄭碩行) 정국용(鄭國用)을 검거하고 서원 十여명이 자동차로 차련관에 가서 차련관 시내 정상운(鄭相允)외 청년十여명 기타 촌사람을 합하여 二十여명을 검거하여 방금취조중이다. 사건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쳐 알수없다. 평북경찰부에서 형사부장이 출장하여 취조한다고 한다”.